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 호	3708

제안일자 : 2026. 6. 12.

제 안 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보궐위원 임기 규정은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원장 지칭을 간결하게 정비하며 누락된 자구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가.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4조제7항)

나. 위원장 지칭을 간결하게 표기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같은조제3항)

다. 누락된 자구(‘조정안과’)를 추가함 (안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7항 중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 하고, 안 같은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수락한 경우에는”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5. 그 밖에 <u>주택임대차</u> 에 관한 분쟁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u> 」(이하 “ <u>령</u> ”이라 한다)에서 <u>정하는 주택임대차</u> -----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u>서울특별시장이</u>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⑥ (생략)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u>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있다.</u> ----- -----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 <u>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 ----- -----

로 한다.

제9조(조정 신청 및 조정 절차)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제9조(조정 신청 및 조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통지한 ----

6. (현행과 같음)

-----.

제9조(조정 신청 및 조정 절차)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

-----.

③ 위원장-----

--.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진단·조사·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u>신청자가</u>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① ----- ----- ----- -----, ----- ----- <u>신청</u> <u>인이</u> ----- ----- ----- ----- -----.	제12조(처리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조사 등) ①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u>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등) ① ----- ----- ----- ----- ---- <u>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u> ----- ----- ----- ----- -----.	제13조(조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② ----- ----- ----- -----	② (개정안과 같음)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조정 의 성립) ① 위 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 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 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 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 ① 「주택임 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 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 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

----- 내보여야 하
며-----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 의 성립) ① 위 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 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 지받은 날부터 14일 ---
----- 서면으로 표시하
지 -----
-----.

③ ----- 각 당사자 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 우에는 -----

-----.

제19조(수수료) ① 영 제33 조제2항제11호-----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조정 의 성립) ① (개 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수락한 경우
에는 조정안과 -----

-----.

제19조(수수료) ① (개정안과 같음)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임대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주택임대차”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 중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통지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신청자가”를 “신청인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을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내보여야하며”를 “내보여야 하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 정본”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으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을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로, “서면 등으로 알리지”를 “서면으로 표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를 “영 제33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u>서울특별시장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 4. (생략) 5. 그 밖에 <u>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u>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u> 」 (이하 “ <u>령</u>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u>주택임대차</u>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u>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③ ~ ⑦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u>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u>	제9조(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u>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u>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

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생략)

제12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진단·조사·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조사 등) ①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1. ~ 4. (현행과 같음)

5. -----
----- 통지한

6. (현행과 같음)

제12조(처리기간) ① -----

-----.

----- 신청인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사 등) ① -----

우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
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
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
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
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조정 의 성립)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
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
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

--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
련 -----

-----.

② -----

-----.
----- 내보여
야 하며-----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 의 성립)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
---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 서면으로 표시
하지 -----
-----.

③ ----- 각 당사자가 조

<u>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u> 제19조(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u>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u> -----. 제19조(수수료) ① 영 제33조제2항제11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